

#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의 안	44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5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개정사유

-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수수료징수기준변경

## 개정주요내용

-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조정

- 1) 에탐부톨 + 피라지나마이드 + 리팜피신 = 2,600원에서 2000원
- 2) 에탐부톨 + 피라지나마이드 + 카나마이신 = 1,800원에서 2000원
- 3) 리팜피신 + 피라지나마이드 + 카나마이신 = 3,400원에서 2000원
- 4) 리팜피신 + 가나마이신 + 에담프톨 = 2,400원에서 2000원
- 5) 에담프톨 + 피라지나마이드 = 1,000원에서 2000원
- 6) 에담프톨 + 리팜피신 = 1,600원에서 2000원
- 7) 피라지나마이드 + 리팜피신 = 2,600원에서 2000원

## 개정근거

-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

- '95 결핵관리사업지침

조례안 : 별첨

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규발췌 : 별첨

기타 참고사항

## 충청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) 항결핵제처방별 보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처방종류	기준	수수료(원)
1) 에탐부톨 + 피라지나마이드 + 리팜피신	1인 1개월	2,000
2) 에탐부톨 + 피라지나마이드 + 카나마이신	1인 1개월	2,000
3) 리팜피신 + 피라지나마이드 + 카나마이신	1인 1개월	2,000
4) 리팜피신 + 가나마이신 + 에담프톨	1인 1개월	2,000
5) 에담프톨 + 피라지나마이드	1인 1개월	2,000
6) 에담프톨 + 리팜피신	1인 1개월	2,000
7) 피라지나마이드 + 리팜피신	1인 1개월	2,000
8) 에담프톨, 아이나, 파스, 스트렙토마이신	1인 1개월	0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